

 <b>질병관리청</b>		<h1>보 도 참 고 자 료</h1>	
배 포 일	2021. 5. 27. / (총 5 매)	담당부서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과 장	홍 정 익	전 화	043-719-8350
담 당 자	방 은 옥		043-913-2310

## 코로나19 일일 1차 접종자 64만 명 넘어

- 18시 기준, 일일 1차 접종자수 646,618명(잠정 집계) -

- ◇ 전국의 지정 병·의원에서 65세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 ◇ 75세 이상 예방접종센터 1차 접종도 순조롭게 진행 중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전국의 지정 병·의원(위탁의료기관)에서 **65세 이상 74세**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한 오늘 18시 기준으로 일일 접종자수(1차 접종 기준)가 **64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 전국의 위탁의료기관(1만3천여개소)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등 56.2만 명, 예방접종센터(265개소)에서 **75세 이상** 어르신 등 8.2만 명 등이 코로나19 1차 접종을 하여, 지난 4월 30일 일일 접종자수 최대치(30.7만 명)를 2배 이상 경신하였다.

< 접종기관별 접종자 수(5.27일 18시 기준) >

구분	합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화이자 백신
		위탁의료기관	보건소·자체접종	예방접종센터
일일 접종자수	646,618명	562,144명	2,663명	81,811명

※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추진단은 사전예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접종 시작일을 기다려주신 어르신들께 감사드리며, 아직 예약하지 않은 어르신의 사전예약과 고품층 예방접종에 가족과 주변의 관심을 당부하였고,

- 아울러 접종 받은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가족과 이웃, 지역사회에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살펴봐 줄 것도 함께 당부하였다.
- 추진단은 오늘부터 많은 분들의 접종이 시작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주의 사항을 재차 당부했다.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및 조치를 위하여 모든 접종 완료자는 예방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 \* 최소 15분 간 관찰하되, 이전에 다른 원인(약, 음식, 주사행위 등)으로 중증 알레르기(예: 아나필락시스) 경험이 있는 경우는 30분 간 관찰
  - 접종 부위는 항상 청결히 유지하고, 동시에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 ※ 어르신은 예방접종 후 증상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혼자 있지 않도록 다른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권고함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구토 등의 전신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나, 이러한 이상반응은 대부분 수일(3일) 내 증상이 사라진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 수분을 섭취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 예방접종 후 발열이나 근육통 등 몸살 증상이 있으면 해열진통제를 하루 정도 복용하고, 특히 젊은 연령층은 전신반응이 심할 수 있으니 진통해열제를 사전에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 <붙임> 1.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안내  
 2.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안내  
 3.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 불충분한 중증 환자 지원 안내

붙임 1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안내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안내



## 이럴 땐, 이렇게 하세요.

- 접종 후 접종부위 부기·통증이 있는 경우, 깨끗한 마른 수건을 대고 그 위에 냉찜질을 하세요.
- 접종 후 미열이 있는 경우,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휴식을 취하세요.
- 접종 후 발열, 근육통 등으로 불편할 경우, 해열·진통제를 복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예방접종 전에 미리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진통제를 준비하고, 예방접종 후 몸살 증상이 있으면 해열·진통제를 복용하세요.



## 이럴 땐, 의사 진료를 받으세요.

- 접종 후 접종부위 부기, 통증, 발적이 48시간이 지나도 호전되지 않는 경우
- 접종 후 4주 내 호흡곤란, 흉통, 지속적인 복부 통증, 다리 부기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 경우
- 접종 후 심한 또한 2일 이상의 지속적인 두통이 발생하며, 진통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조절 되지 않는 경우 또는 시야가 흐려지는 경우
- 접종 후 갑자기 기운이 떨어지거나 평소와 다른 이상 증상이 나타난 경우
- 접종 후 접종부위가 아닌 곳에서 멍이나 출혈이 생긴 경우



## 이럴 땐, 119에 신고 또는 응급실을 방문하세요.

- 접종 후 숨쉬기 곤란하거나 심하게 어지러운 경우
- 접종 후 입술, 얼굴이 붓거나 온몸에 심한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 접종 후 갑자기 의식이 없거나 쓰러진 경우

2021.04.12.



붙임2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안내

2021.5.21.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개요>

- ☑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피해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상을 받습니다.
- ☑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하여 피해보상 본인부담금 신청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30만원 이상 → 제한 없음).  
 \*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나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 (<https://ncv.kdca.go.kr>)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접종 후 중증환자 지원사업으로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하였으나, 백신과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여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신설
- 2021년 5월 17일(이전) 접종자도 소급 적용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를 1인당 최대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 \* 단, 기존 기재제한 차등비 및 간병비 등은 제외
- (지원대상) 이상반응으로 신고되거나 피해보상 신청사실에 대하여 예방접종피해조사반 또는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중증이면서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심자기준, ①-1 해당)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안내



01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의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 적용하고, 소액심의 절차 마련 및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였습니다.

02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국가 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은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03 피해보상 청구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 신분증\*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미만만 해당)
- 접종 후 의무기록사본(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이상만 해당)
- 접종 이전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 사본(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이상만 해당, 있는 경우 제출)

장애인 일시보상금신청

-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 진단서(장애인복지법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표에 따른 장애 등급 포함)
- 신분증\*

사람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 사람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 사망진단서
-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 부검조서

04 피해보상 절차는 어떻게 되고 보상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제40조 제2항에 따라 생산된 예방 치료 의약품을 투여 받은 사람이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이를 보상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시도지사는 즉시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피해보상신청 서류에 기초조사 결과 및 의견서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질병관리청장은 보상청구가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상여부를 결정합니다.

05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피해보상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 진료비(본인부담금) 및 정액간병비(입원치료에 한하여 1일당 5만원)
- 장애인일시보상금
-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06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있나요?

재중영료, 영양제 수액(알부민 등), 물리치료 등의 항목은 피해보상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단, 포도당, 생리식염수 등의 수액은 보상지급 대상에 포함

07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응급실 등에 내원할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만 진료가능하는데, 코로나19 검사 비용도 보상대상이 되나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만 진료가능할 수 있으므로, 코로나19 검사 관련 본인부담금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 (근거 법령) 「감염병예방법」 제71조, 시행령 제29~제31조, 시행규칙 제47조
- (보상 종류) 진료비 및 정액 간병비, 사망·장애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 (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청 고시 제2020-9호)에 명시된 백신 및 접종 대상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한 임시예방접종 접종자 등
- (보상신청기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 (보상신청 가능 횟수)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여 가능

붙임3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 불충분한 중증 환자 지원 안내

2021.5.21.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시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한시적 신설

1/7

2021.5.21. 질병관리청

5월 17일\*부터 인과성은 불충분하지만  
중증 환자를 보호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작합니다.

\*시행일 이전 접종자 소급 적용

중증 환자 보호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2/7

2021.5.21. 질병관리청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과 투명한 소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모두함께 이겨내요!

7/7

2021.5.21. 질병관리청

**지원대상**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 제외된 중증 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하였으나(중증\*), 피해조사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 해당 (심의기준 ④-1 해당)

\* 사망, 중환자실 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치료, 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이 접종 전에 이미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불명확하고,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모시간이 개연성으로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

(피해보상금 심의기준)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결과  
① 인과성 명백, ② 인과성에 개연성이 있음, ③ 인과성에 가능성 있음,  
④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움 ⑤-1 근거자료 불충분, ⑤-2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  
⑥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  
①,②,③에 대해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보상금 지급, ④-1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비 지원(중증에 한함)

3/7

2021.5.21. 질병관리청

**지원범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④-1 판단 관련질환)의 진료비

**지원한도**

1인당 최대 1,000만 원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장제비 제외  
\*추후에 근거가 확인되어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 피해보상을 하게 되며, 선 지원된 의료비는 정산 후 보상

4/7

2021.5.21. 질병관리청

**지원절차**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

- ① 이상반응 신고(의사) 또는 피해보상 신청(본인/보호자)
- ② 지자체 기초조사 (사·도 담당자 또는 신속대응팀)
- ③ 인과성·중증 여부 판단 등 지원대상자 심의·선정 (예방접종피해조사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 ④ 진료비 지원대상 충족 시 의료비 지원 (질병관리청)

5/7

2021.5.21. 질병관리청

**신청서류**

- ① 지원 신청서
-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질환의 증상 및 발생일 명시)
- ③ 신분증, 신청인과 본인(지원대상자)의 관계 증명 서류 등
- ④ 진료비 영수증
- 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 ⑥ 의무기록 사본
- ⑦ 의료비 지원금 지급 받을 계좌

6/7